

Convention Today

Effective Date 2024-07-01 ~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2011 ESP Code		CODE	2011 ESP Code의 개정	Res.MSC.525(106)

적용 : Oil tankers and bulk carriers

- 연차검사 시 구획검사 및 두께계측이 필요한 산적화물선 평형수 탱크의 도장상태를 "Poor"에서 "Less than good"으로 강화함.
- 선령 20년 초과 길이 150m 이상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공간에 대한 검사 및 두께계측 요건(정기검사 및 필요한 경우 중간/연차검사 시)을 신설함.
- "이중선체 유조선" 및 "유조선"의 정의를 개정하여 아스팔트 운반선 등 독립형 화물탱크를 가진 유조선을 ESP Code의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
- 유조선에 있어 선원에 의한 화물탱크압력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이 일부 변경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액화가스선 및 가스/저-인화점 연료추진 선박의 극저온 서비스를 위한 대체금속물질의 승인에 관한 개정된 지침	MSC.1/Circ.1622/Rev.1

적용 :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and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2020년부터 MSC.1/Circ.1622 및 그 개정 문서인 MSC.1/Circ.1648은 극저온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대체금속물질의 문서,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상세지침을 제공해온 바 있음.

MSC.1/Circ.1599/Rev.3 " 극저온 서비스를 위한 고망간 오스테나이트강의 적용에 관한 개정된 지침"과 동일하게, MSC.1/Circ.1622 상의 해당 지침은 암모니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적합성 시험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MSC.1/Circ.1648을 통해 이루어진 이전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극저온 서비스용 고-망간 강의 적용에 관한 개정된 지침	MSC.1/Circ.1599/Rev.3

적용 :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and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IGC Code 및 IGF Code에 따라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강은 최저설계 온도가 165℃ 인 판, 형재, 단조품 제작을 위한 극저온 재료로 인정되며 그 사용은 MSC.1/Circ.1599에 따라 승인되어야 함.

개정된 지침은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강의 사용이 적합한 화물 또는 연료로서 기존에 포함된 부탄, 부탄-프로판 혼합물, 이산화탄소, 에탄, 에틸렌, 메탄, 펜탄 및 프로판 등과 더불어 암모니아를 추가하였으며, 암모니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적합성 시험 요건을 강화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LPG 화물의 연료 사용에 관한 임시 지침	MSC.1/Circ.1679

적용 : All ships using LPG cargo as fuel

선박연료로서 LPG 화물의 안전한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CCC 9은 'LPG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임시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이 임시 지침은 MSC 108에서 승인되어 MSC.1/Circ.1679로 발간됨.

이 새로운 임시 지침은 LPG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관련 요건이 IGC Code 내에 수립될 때까지 연료공급장치와 Gas Consumer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승인되었음.

따라서 이 임시 지침은 IGC Code 16 장의 16.9항 즉, 대체연료 및 기술에 대한 지침으로서 액화가스선에 적용될 수 있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IBC Code		CODE	여닫이 수밀문 관련 IBC Code의 개정 (IBC Chapter 2 / 2.9)	Res.MSC.526(106)

적용 : Chemical tankers

MSC 106은 IBC Code 개정을 채택하여 모든 침수(Flooding) 단계 상 계속적 침수 또는 하방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개구부들 중 여닫이 수밀문들을 제외함. 즉, 여닫이(Hinged) 수밀문 또한 미닫이(Sliding) 수밀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침수가 발생가능한 개구로 보지 않음.

IBC Code의 개정사항은 SOLAS의 수밀문 개념을 IBC Code에 반영하며, 이미 Resolutions MSC.491(104), MSC.492(104) 및 MEPC.343(78)을 통해 각각 채택된 바 있는 ICLL 1988 Protocol, IGC Code 및 MARPOL 협약의 개정사항들과 일치시킴.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CODE	산적유해액체운반선의 수밀문에 관련된 IBC Code 개정안	Res.MEPC.345(78)

적용 : IBC Code를 적용받는 모든 케미칼 탱커

MEPC 78차는 산적유해액체운반선의 수밀문에 관련된 IBC Code 개정안을 Res.MEPC.345(78)으로 채택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발효:

- SOLAS 및 MSC.1/Circ.1572/Rev.1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물선 수밀격벽의 수밀문 형식(동력식 미닫이 문, 미닫이 문, 여닫이 문)은 항해 중 문의 사용 빈도 (사용되는 문, 통상 폐쇄되는 문,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문)에 따라 그 형식이 결정되지만 케미칼 탱커에 IBC Code의 2.9.2규칙은 사용되는 문으로서 동력식 미닫이 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SOLAS 협약요건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현존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고려하여 모든 선박(신조 및 현존)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CODE	신규 SOLAS XV장 및 IP Code의 제정	Res.MSC.521(106) & Res.MSC.527(106)

적용 : Cargo ships and high-speed cargo crafts transporting more than 12 Industrial Personnel

MSC 106은 기존 SOLAS 협약 및/또는 HSC Code에 추가하여 500 GT 이상의 화물선과 고속 화물선에 12인 초과 산업인력을 운송하기 위한 안전요건을 수립하고자 신규 SOLAS XV장 및 IP Code를 채택함.

12인 초과 산업인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선 또는 고속 화물선이 그 건조일에 관계없이 SOLAS XV장 및 IP Code를 준수하고 그에 따라 인증되어야 함.

관련된 인증을 위해 SOLAS 안전증서 또는 HSC 안전증서에 추가하여 IP 안전증서가 발급되어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4-07-18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IMO 회원국 감사제도 (IMSAS)에 관한 지침	MSC-MEPC.2/Circ.19

적용 : All IMO Member States

동 지침은 IMO 회원국들의 III Code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공통이해 및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하의 감사 준비를 위한 IMO 회원국의 매뉴얼을 제공한다.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	------------	------------	-----------	-------	-------------------

2025-01-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SOLAS Reg.II-1/25, II-1/25-1 및 XII/12 에 따른 화물창 수위감지기에 대한 통일해석	MSC.1/Circ.1572/Rev.2
적용 : Water level detectors installed on single hold cargo ships other than bulk carriers (SOLAS Reg.II-1/25), multiple hold cargo ships other than bulk carriers and tankers (SOLAS Reg.II-1/25-1) and bulk carriers (SOLAS Reg.XII/12) 탱커 및 벌크선 외 다수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2024년 1월 1일부터 수위감지기(water level detector)를 강제하는 SOLAS Reg.II-1/25-1이 2021년 Res.MSC.482(103)을 통해 채택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서 수위감지기의 성능기준 또한 개정되어 Res.MSC.188(79)/Rev.2로 발간된 바 있음. 이와 관련, SDC 10은 상기 신규요건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MSC.1/Circ.1572/Rev.1에 포함된 수위감지기에 관한 기존 통일해석을 업데이트하였으며, MSC 108에서 이를 승인하였음. 특히, MSC 108에서 승인된 개정사항 중 MSC.1/Circ.1572/Rev.1의 9.2항의 공통해석 5 번 항목은 "먼지 및 가스의 특성을 알 수 없는 경우 운송되는 화물에 따라 Temperature Class T6, Gas Group IIC 및/또는 Dust Group IIC 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석함. 개정된 통일해석은 기존 MSC.1/Circ.1572/Rev.1을 개정하면서 철회하는 MSC.1/Circ.1572/Rev.2의 9항에 포함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수위감지기에 적용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1-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SOLAS Reg.II-1/3-6 에 따른 영구적 접근수단(PMA)에 관한 통일해석	MSC.1/Circ.1572/Rev.2
적용 : Oil tankers of 500 gross tonnage and over and bulk carriers, as defined in regulation IX/1, of 20,000 gross tonnage and over IACS는 SDC 10에 선박검사 중 Topside Tank 로의 접근 사다리가 상당한 부식과 손상으로 인해 붕괴되었다는사고를 보고함. SDC 10은 IACS의 제안을 바탕으로 MSC.1/Circ.1572/Rev.1의 1.4 항에 수록된 영구적인 접근수단(Permanent Means of Access, PMA)에 관한 기존 통일해석을 다음과 같이 선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화함: - 휴대용을 포함한 접근 수단은 매년 선원 또는 자격 있는 검사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함. 그러한 검사는 선박구조접근매뉴얼의 2장에 기록되어야 함; - PMA를 활용한 구획검사에 앞서 PMA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각 구획별로 기록되어야 함; - 손상 식별 시, 선박구조접근매뉴얼의 2장에 기록되어야 함; - PMA의 검사기록은 검사 전 현장 검사원에게 제공되어야 함. 상기와 같이 개정된 통일해석은 MSC 108에서 승인되어 MSC.1/Circ.1572/Rev.1을 개정 및 철회하는 MSC.1/Circ.1572/Rev.2 의 1 항에 수록됨. 이러한 공통해석은 SOLAS regulation II-1/3-6에 따라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요구되는 500GT 이상의 유조선 및 20,000GT 이상의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선원 또는 자격 있는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에 적용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1-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해사안전정보(MSI)에 관한 IMO/IHO/WHO 의 공동 매뉴얼	MSC.1/Circ.1310/Rev.2
적용 : All ships MSC.1/Circ.1310 MSI 관련 IMO/IHO/WHO 공동 매뉴얼은 항해경보, 기상경보 및 기상예보 메시지에 사용되는 구성 및 문구에 관한 다수의 지침과 예시를 제공해온 바 있음. 이 공동 매뉴얼은 상세검토를 거쳐 타 IMO 문서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메시지 예시들을 업데이트하여 개정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1-01	Amendments to the IMSBC Code		CODE	IMSBC Code의 개정 (07-23)	Res. MSC.539(107)
MSC 107 은 금번 개정사항(07-23)을 포함한 IMSBC Code 의 통합본을 채택함. 동 개정사항(07-23)은 특히 IMSBC Code 의 Appendix 1 에 산적 건화물들을 추가 (14개 화물) 및 삭제 (1개 화물)함.					

또한, 동 개정사항(07-23)은 선적 전 화주에 의해 선박으로 제공되어야 할 화물정보 중 하나로 '(SOLAS XII 장10 규칙에 따른) 산적밀도(Bulk density)' 항목을 추가함.
동 개정사항(07-23)은 2025.1.1 발효 예정이며, 2024.1.1부터 자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1-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MARPOL	홍해해역(Red Sea) 및 아덴만해역(Gulf of Aden Area)의 특별해역 발효날짜 설정 (MARPOL Annex I)	Res.MEPC.381(80)

적용 : 홍해 및 아덴만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홍해해역 및 아덴만해역은 해상무역의 주요한 통항로를 제공하고 10%에 달하는 세계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동 해역에서의 해운 및 항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모든 종류의 잔류물, 특히 유성 혼합물, 플라스틱 및 기타 합성물질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및 연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홍해와 아덴만지역의 국가들은 Eritrea와 Yemen을 제외하고 모두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따라서 동 지역의 항구, 터미널 및 선박수리 항구에 MARPOL Annex I 및 V에 관련된 선박기인 폐기물 및 잔류물에 대한 처분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용시설 및 관련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홍해해역 및 아덴만해역 내의 모든 항구 및 터미널에서 MARPOL Annex I 및 V에 관련된 폐기물 및 각종 잔류물에 대한 필수적인 수용시설들이 이용 가능함을 고려하여, MEPC 80차는 MARPOL Annex I 및 V에 따른 홍해해역 및 아덴만해역의 특별해역 발효날짜를 2025년 1월 1일로 설정하기 위한 결의서 Res.MEPC.381(80)를 채택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1-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MARPOL	홍해해역(Red Sea)의 특별해역 발효날짜 설정 (MARPOL Annex V)	Res.MEPC.382(80)

적용 : 홍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

홍해해역 및 아덴만해역은 해상무역의 주요한 통항로를 제공하고 10%에 달하는 세계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동 해역에서의 해운 및 항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모든 종류의 잔류물, 특히 유성 혼합물, 플라스틱 및 기타 합성물질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및 연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홍해와 아덴만지역의 국가들은 Eritrea와 Yemen을 제외하고 모두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따라서 동 지역의 항구, 터미널 및 선박수리 항구에 MARPOL Annex I 및 V에 관련된 선박기인 폐기물 및 잔류물에 대한 처분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용시설 및 관련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홍해해역 내의 모든 항구 및 터미널에서 MARPOL Annex V에 관련된 폐기물에 대한 필수적인 수용시설들이 이용 가능함을 고려하여, MEPC 80차는 MARPOL Annex V에 따른 홍해해역의 특별해역 발효날짜를 2025년 1월 1일로 설정하기 위한 결의서를 Res.MEPC.382(80)으로 채택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1-01	Amendments to the STCW Convention and Code		OTHER CONVENTION	선원의 교육 및 자격과 관련된 전자증서의 사용 (STCW Convention & Codes Reg.I/2)	Res.MSC.540(107), Res.MSC.541(107), MSC.1/Circ.1665

적용 : All ships

MSC 107 은 선원 전자증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증서의 발급과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STCW협약 및 STCW Code의 개정사항을 채택함. 동 개정사항은 2025.1.1 발효되며, 금번 회기 함께 승인된'선원 전자증서의 사용에 관한 지침'(MSC.1/Circ.1665)에 의해 지원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2-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OTHER CONVENTION	평형수 기록부 양식 개정에 관한 BWM 협약의 부록 II 개정안	Res.MEPC.369(80)

적용 : BWM 협약대상 모든 선박

MEPC 80차는 평형수 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 양식의 개정안을 제공하는 BWM 협약의 부록(Appendix) II의 개정안을 Res.MEPC.369(80)로 채택하였음. 동 개정안은 지난 MEPC 78차로 보고된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 관련 분석보고서의 주요사항 중, 평형수 기록부의 기록사항이 가장 많은 빈도(70% 이상)를 차지하는 결함사항으로 현행의 평형수 기록부 양식이 동 협약의 부록 II에 따른 작성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개발된 개정안임. 개정된 평형수 기록부 양식은 기류기록부와 유사한 Code를 제공하며, 선박에 설치된 BWMS에 관한 사항들의 기록을 개선하기 위함임. 특히, 개정된 평형수 기록부 양식의 도입으로 BWMS를 통하여 평형수를 처리할 경우, 현 양식의 3.1항(평형수 주입)과 3.2항(평형수 관리)을 동시에 기재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관련항목의 중복기재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동 개정안은 2025년 2월 1일 발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5-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MARPOL	지중해 해역(Mediterranean Sea)의 황산화물 및 미립자에 대한 배출규제해역 지정에 관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	Res.MEPC.361(79)

적용 : MARPOL Annex VI를 적용받는 지중해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MEPC 79차는 지중해 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을 포함하는 Res.MEPC.361(79)를 채택하였음. 동 지역의 배출규제해역 발효일은 MARPOL Annex VI의 14.7규칙에 언급된 1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1일이 될 것임.

선주 및 운항자는 해당 선단이 2025년 5월 1일 이후에 동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0.10% m/m를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적합유를 본선에 보유하고 연료 전환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함. 배출규제해역의 추가지정은 EGCS를 탑재한 선박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선주 및 운항자는 동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야 함. 주관청은 동 개정으로 인한 권한 및 책임에 주목하고, 확인된 부적합 사례에 대한 필요 조치를 포함하여 이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수립을 고려해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08-01	Amendments to the MARPOL		MARPOL	MARPOL Annex VI의 개정안	Res.MEPC.385(81)

적용 : 모든 선박

저-인화점 연료 및 기타 연료유 관련 안전들, 증기(steam) 시스템을 대체하는 디젤기관, IMO 선박연료소모량 데이터베이스(IMO DCS)의 접근성, 및 IMO DCS로 보고되는 데이터의 세분화 및 운송업무량 추가에 관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이 Res.MEPC.385(81)로 채택됨. 동 개정안은 2025년 8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저-인화점 연료 및 기타 연료유 관련 안전들

지난 MEPC 79차는 MARPOL Annex VI의 18.5규칙에 따른 연료유 공급서로 추가되어야 할 정보에 “인화점”을 추가하기 위한 MARPOL Annex VI 부록 5의 개정초안을 Res.MEPC.362(79)로 채택한 반면, SOLAS II-2장의 “oil fuel”로 정의된 액체연료 기반의 연료와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모두 포함시키는 “fuel oil”을 정의한 MARPOL Annex VI에 정의된 연료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개정안은 메탄올 및 에탄올과 같은 저-인화점 액체연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따라서, 동 정의들 간의 규정상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MARPOL Annex VI의 2, 14, 18 및 부록 1의 개정안이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함:

1. 가스연료와 저 인화점 연료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스연료의 새로운 정의는 IGF Code에 따른 “가스”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로 합의함;

2. MARPOL Annex VI의 14.10 및 14.11규칙에 따른 In-use 및 Onboard 샘플링 포인트 요건 및 18.8규칙에 따른 MARPOL 대표샘플 요건들은 가스 및 저 인화점 연료에 적용되지 않음에 동의함;
3. 저 인화점 연료에 대한 황 함유량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여전히 연료유공급서(BDN)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MARPOL Annex VI의 목적 상 연료유공급서 요건은 저 인화점 연료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 동의함; 및

연료의 정의에 언급된 “추진을 위한 연소목적”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위한”이라는 용어로 개정함에 동의함.

증기(steam) 시스템을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

13.2.2규칙에 따라 기관의 추가 또는 교체 시의 NOx Tier 요건의 적용을 수반하는 “주요 개조” 측면에서, 증기시스템(주 보일러 및 증기터빈)을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이 선박용 기관의 “교체”로 간주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MARPOL Annex VI의 13.2.2규칙의 개정안이 도입되었음.

동 개정안에 따른 관련 지침서의 추가 개정안으로서, MEPC 81차는 상기 언급된 13.2.2규칙의 개정안 채택과 더불어 ‘Tier III 기준의 만족이 요구되지 않는 동일하지 않은 교체 엔진과 관련하여 13.2.2규칙에서 요구하는 2023 지침서’를 제공하는 Res.MEPC.386(81)을 추가로 채택하였음. 최신화 된 지침서는 선박용 디젤기관이 증기 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에 대하여 Tier III NOx 기준의 적용 대신 Tier II NOx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관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하지 않은 교체엔진이 Tier III NOx 기준의 만족이 불가능하여 Tier II를 만족하는 엔진을 대신 탑재하도록 허용한 주관청이 기구로 보고해야 할 정보들을 위한 보고양식 또한 제공함.

IMO 선박연료소모량 데이터베이스(IMO DCS)의 접근성 및 IMO DCS로 보고되는 데이터의 세분화/운송업무량 추가 연료소모량 보고자료의 세분화 및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정보에 관한 MARPOL Annex VI의 27규칙 및 부록 9 개정안이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함:

1. 엄격한 보안규칙에 따라 임시적으로 분석/연구목적으로 IMO DCS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음. 선사의 요청에 따라, 선사가 소유한 선박들에 대한 연료소모량 보고서는 비-익명 양식으로 대중으로 공개될 수 있음; 및

데이터의 중복수집 및 보고를 피하고, 개정된 양식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기조치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조기적용 하기로 합의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5-10-01	Amendments to the BWM		OTHER CONVENTION	전자기록부 사용에 관한 BWM 협약의 개정안	Res.MEPC.383(81)

적용 : BWM 협약적용대상 모든 선박

전자기록부 사용에 관한 BWM 협약의 개정안이 Res.MEPC.383(81)로 채택됨. BWM협약의 B-2.1규칙은 평형수 기록부가 전자기록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반면 이의 사용에 관련된 지침이 별도로 없음을 고려하여, 지난 MEPC 80차는 MARPOL 및 NOx Technical Code에서 허용하는 전자기록부 요건과 일치시키기 위한 BWM 협약에 따른 전자기록부 사용에 관한 지침을 Res.MEPC.372(80)으로 채택하였었음.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부의 정의, 전자기록부의 승인요건 및 선장에 의한 검증요건을 포함한 BWM 협약의 A-1 및 B-2 규칙의 개정안이 도입되었으며, 2025년 10월 1일에 발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1994 STCW-F Convention and the STCW-F Code			어선원의 교육, 인증 및 당직 (1994 STCW-F 협약 및 STCW-F Code)	Res.MSC.561(108), Res.MSC.562(108)

적용 : Fishing vessels

1994 STCW-F 협약의 전면 개정이 신규 STCW-F Code 와 함께 MSC 108 에서 채택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2011 ESP Code		CODE	두께 측정 업체에 대한 승인 (2011 ESP Code)	Res.MSC.553(108)

적용 : Oil tankers and bulk carriers

ESP Code의 파트 별로 수록된 '선체 두께 측정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한 승인 및 인증 절차'에 인정기관(RO)이 아닌 주관청이 직접 두께측정업체에 대한 심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함. 그러나 이 개정으로 인해 주관청이 두께측정업체에 대한 승인 권한을 인정기관(RO)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Circulars		CIRCULAR	개정된 MARPOL Annex VI 및 SOLAS II-2장의 준수를 위한 연료유 샘플링 지침서	MSC-MEPC.2/Circ.18

적용 : All ships

MARPOL 부속서 VI의 18.5 규칙 관련, Res.MEPC.182(59)는 수급된 선박용 연료유의 대표적 샘플을 취하는 합의된 방법을 제공 해온 바 있음.

연료유 안전 향상을 위한 논의 결과물로서, Res.MEPC.182(59)를 바탕으로 SOLAS II-2 장 4.2.1 규칙 및 전술한 MARPOL 조항 모두를 뒷받침할 수 있는 MSC-MEPC Circular가 MEPC 81과 MSC 108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FSS Code		CODE	고정식 물-기반 소화장치	Res. MSC.555(108)

적용 : New building ro-ro passenger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로로 여객선의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에 설치되어야 하는 물 방사기로 구성된 고정식 물-기반 소화장치의 엔지니어링 사양이 **FSS Code Chapter 7 / Reg.2.5**에 수립됨.

각 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5.1) 고정식 물 방사기(water monitor)가 소화수를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 구역 및 인접한 구역(즉, 인접한 8미터 이내 구역 또는 인접한 수직경계면 중 더 가까운 장소)까지 분사할 수 있어야 함.

(2.5.2) 모든 고정식 물 방사기(water monitor)의 합산용량은 평방미터 당 2.0 리터/분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물 방사기(water monitor)의 용량은 1,250 리터/분 이상이어야 함. 또한 각 물 방사기(water monitor)의 용량은 균등히 분배되어야 함.

(2.5.3) 물 방사기(water monitor)로부터 그 전방보호구역의 가장 먼 끝까지의 거리는 무풍상태에서의 물 방사기(water monitor) 방출거리의 75%에 상당하는 거리 이하여야 함.

(2.5.4) 물 방사기(water monitor)는 보호되는 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화재 시 차단되지 않는 접근이 제공 될 것. 단, 물 방사기(water monitor)가 달지 않은 구역은 평방미터 당 5.0 리터/분 용량의 노즐로 대체.

(2.5.5)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전체 폭 및 40미터 길이의 구역에 대해 요구되는 용량으로 동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량은 가장 큰 물 방사기(water monitor)에 요구되는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됨.

(2.5.6) 동 시스템은 소화주관(Fire main), 타 고정식 소화장치(물-기반)를 공급하는 펌프 또는 전용 펌프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음. 펌프의 용량은 2.5.6항 원문을 참고할 것.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	------------	------------	-----------	-------	-------------------

2026-01-01	Amendments to the FSS Code		CODE	로로 여객선의 가시가청 화재 신호	Res.MSC.555(108)
적용 : New building ro-ro passenger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로로 여객선의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의 엔지니어링 사양이 FSS Code Chapter 9 / Reg.2.5에 수립됨. 각 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5.1.2) 경보(Alarm)의 통지는 일관적인 경보방식(언어, 단어, 색상 및 위치)를 따라야 함. 경보는 선교에서 즉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며, 소음 또는 잘못된 위치로 인해 방해되어서는 아니됨. (2.5.1.3) 인터페이스는 경보의 주소, 경보의 이력, 최신 경보, 경보의 억제 수단을 제공해야 함. (2.5.1.4)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 내 연기 탐지기 기능은 차량의 적-양하 시 차단될 수 있음. Control Panel 상 탐지기의 Section들이 차단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열 탐지기 기능 또는 수동작동 콜포인트의 차단은 허용되지 않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FSS Code		CODE	결합형 연기-열 탐지기와 선형적 열 탐지기의 엔지니어 사양	Res.MSC.555(108)
적용 : All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결합형 연기-열 탐지기와 선형적 열 탐지기의 엔지니어 사양이 FSS Code Ch.9/2.3 및 2.4에 포함됨. 이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조(K/L)되는 선박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3.1.3 및 2.3.1.4) 기존 열 탐지기 요건에 "선형적 열 탐지기(linear heat detector)"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 열 탐지기 요건들을 따르도록 함. (2.3.1.5) 선형적 열 탐지기(linear heat detector)가 EN 54-22:2015 및 IEC 60092-504에 따라 시험되어야 함. (2.4.2.2) 결합된 연기 및 열 탐지기의 최대바닥면적(74 제곱미터), 탐지기 간 간격(9m) 및 격벽이격거리(4.5m)에 관한 요건을 기존 Table 9.1에 추가함. 선형적(linear) 열 탐지장치의 2개의 센서 케이블 사이의 거리는 9.0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센서 케이블과 격벽 간 거리는 4.5m를 넘지 않아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Grain Code		CODE	곡물 운송을 위한 신규 적재 조건 (Grain Code)	Res.MSC.552(108)
적용 : All cargo ships intended for the carriage of grains under the new loading condition from 1 January 2026 끝단의 평탄화 없이 해치개구에서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특수적합구획 (specially suitable compartment partly filled in way of the hatch opening, with ends untrimmed)'이라는 새로운 등급의 적재조건을 도입하고, 그러한 조건 하의 곡물 운송 요건을 수립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	------------	------------	-----------	-------	-------------------

2026-01-01	Amendments to the IGC Code		CODE	극저온재료로서 고망간강의 사용을 위한 IGC Code의 개정(IGC Code Chapter 6 / 6.4)	Res.MSC.523(106)
------------	----------------------------	--	------	---	------------------

적용 : Gas carriers

MSC 106은 최소설계온도 -165°C의 극저온 재료로서 고망간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IGC Code 의 개정을 채택함.
개정된 IGC Code 및 IGF Code에 따라 고망간강이 최소설계온도 -165°C의 극저온 재료로서 인정됨.
2026년 1월 1일부터 IGC Code 또는 IGF Code에 따라 인증되는 선박은 고망간강을 극저온 재료(예: 초저온 화물 또는 연료탱크)로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국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IGF Code		CODE	극저온재료로서 고망간강의 사용을 위한 IGF Code의 개정 (IGF Code Part A-1 / Reg7.4)	Res.MSC.524(106)

적용 :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and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MSC 106은 최소설계온도 -165°C의 극저온 재료로서 고망간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IGF Code의 개정을 채택함.
개정된 IGC Code 및 IGF Code에 따라 고망간강이 최소설계온도 -165°C의 극저온 재료로서 인정됨.
2026년 1월 1일부터 IGC Code 또는 IGF Code에 따라 인증되는 선박은 고망간강을 극저온 재료(예: 초저온 화물 또는 연료탱크)로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국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IGF Code			IGF Code 개정 (현존선 소급 적용 요건 포함)	Res.MSC.551(108)

적용 : These amendments generally apply to new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but some provisions retroactively apply to all ships.

(2.2.43) "2026.1.1. 이후 건조된 선박"의 정의
적용: 신조선
내용: "2026.1.1. 이후 건조된 선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2.2.43 2026.1.1. 이후 건조된 선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2026.1.1. 이후 건조계약된 선박; 또는
-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2026.1.1.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 2030.1.1. 이후 인도되는 선박

(4.2.2, 8.4.1, 8.4.2 및 8.4.3) 병커링 매니폴드
적용: 모든 선박 (소급적용)
내용: 병커링 매니폴드의 연결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Dry Disconnect/Connect Coupling 뿐만 아니라 수동연결 커플러, 유압연결 커플러 또는 볼트체결 플랜지 등도사용될 수 있음.
다만, 병커링 매니폴드의 연결을 위해 수동연결 커플러, 유압연결 커플러 또는 볼트체결 플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운영절차의 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위험성 평가가 요구됨.
병커링 공급 측에 설치되지 않는 한,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물리적 분리를 가능케 하는 Emergency Release Coupler (ERC)/Emergency Release System (ERS)가 제공되어야 함.

(5.12.1) Air locks 문턱 높이
적용: 신조선
내용: Air lock 의 문턱 높이 요건(즉, 최소 300mm)은 위험구역으로 연결되는 문에만 적용됨을 명시함.

(6.7.3.1.1) 압력도출밸브의 용량
적용: 신조선
내용: 각 액화가스 연료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어느 1개의 압력도출밸브를 차단하더라도 나머지 압력도출밸브의 합산 용량이

해당 장치에 요구되는 총 도출 용량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6.9.1.1) 액화가스 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제어

적용: 신조선

내용: 연료의 증기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탱크를 제외하고, 증기의 재액화, 증기의 열산화, 축압 또는 액화가스 연료냉각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액화가스 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수정함.

(9.3.1) 단일연료공급시스템의 이중화 및 격리

적용: 신조선

내용: 단일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요구되는 연료공급시스템의 이중화 및 격리 수준을 완화(즉, 연료탱크로부터 **Consumer** 까지의 완전한 이중화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주관청이 연료공급시스템의 누출 또는 고장 시 추진성능의 부분적 감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9.4.7) 연료공급관의 환기

적용: 신조선

내용: 기존 요건은 **Double Block/Bleed V/V** 의 하류만 환기(**ventilated**)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Master Gas Fuel Valve** 가 자동으로 폐쇄될 경우, 하류의 모든 가스 공급관은 자동으로 환기(**vented**)되어야 함.

(9.4.8) 연료공급관의 수동조작 폐쇄밸브

적용: 신조선

내용: 엔진 뿐만 아니라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Consumer**"로 이어지는 연료공급관의 **Double Block and Bleed Valve** 전단에 1개의 수동조작 폐쇄밸브가 요구될 수 있도록 "엔진"이라는 용어를 "**Gas consumer**"로 수정함.

(9.8.1, 9.8.2 및 9.8.4) 외측관 및 덕트의 설계압력

적용: 신조선

내용: 기존 요건은 연료공급장치의 외측관 및 덕트의 설계압력은 원칙적으로 내측 연료관의 최대 작동 압력(**max. working pressure**) 이상이어야 함.

단, 작동 압력이 **1.0 MPa** 이상인 연료공급장치에 한하여 대안적으로 외측관 및 덕트의 설계압력을 최대 총만 압력(**max. built-up pressure**) 등으로 완화할 수 있었음.

이번 개정은 내측 연료관의 최대 작동 압력(즉, **1 MPa** 이상 또는 미만)에 관계없이 외측관 및 덕트의 설계압력을 내측관 파열 시 최대 총만 압력 또는 국부순간 최고 압력 중 높은 값으로 완화하는 것을 허용함.

(11.3.1) 연료준비실의 화재보호

적용: 신조선

내용: 금번 개정은 연료준비실의 경우 **SOLAS II-2장 9규칙**의 적용목적 상 **A류** 기관구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명함.

(11.6.2) 연료준비실의 소화기

적용: 모든 선박 (소급적용)

내용: 기존 **IMO** 협약에 의해 다른 장소에 요구되는 휴대식 소화기에 추가하여, 최소 **5kg** 용량의 휴대용 분말 소화기 1개를 연료준비실(**fuel preparation room**)에 배치해야 함.

202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발효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검사까지 동 요건을 만족해야 함.

(12.5) 위험구역

적용: 신조선

내용: **IEC 60092**의 위험구역 분류와 일치하도록 연료탱크의 방벽 간 구역 (**inter-barrier space**) 분류를 기존 위험구역 **Zone 1**에서 **Zone 0**으로 강화함.

(15.4.1.3) 연료탱크의 액면계

적용: 신조선

내용: **IGC Code**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료탱크를 관통하는 밀폐식 장치가 액면계로 사용될 수 있음.

(18.4.1.1) 벙커링 작업

적용: 모든 선박 (소급적용)

내용: 벙커링 작업 개시 전, 선장 및 벙커업체가 서면을 통해 상호합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최소/최대 제한운송압력 및 온도, 벙커라인의 압력도출밸브 (**PRV**) 설정치 등을 추가함.

상기 개정사항 외에도, 5.3.3.3, 5.3.4.4, 6.4.15.3.1.2, 6.7.3.1.1.2, 7.3.2.1, 16.3.5.1항의 일부 문구들이 개정됨 (Editorial amendments).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IMDG Code		CODE	IMDG Code의 개정 (42-24)	Res.MSC.556(108)

적용 :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IMDG Code 42-24 개정을 포함한 IMDG Code 통합본이 MSC 108차에서 채택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IMDG Code 의 3.2장 하에 수록된 위험화물 목록에 11 개의 위험화물이 새롭게 추가됨.
- 엔진 또는 배터리 구동 차량의 운송과 관련된 SP388, SP400, SP401, SP961, SP962 및 SP977 등의 특별조항들이 IMDG Code 의 3.3장에 개정 또는 신설됨.
- UN 3536(즉, Cargo Transport Unit 에 설치된 리튬 배터리)의 적재 및 분리에 대한 요건이 그 고유의 안전위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됨.
- 화물 컨테이너와 같은 Cargo Transport Unit 의 내외부에 직접 부착되는 데이터 기록기(data logger), 센서 및 화물추적장치 (cargo tracking device)는 202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5.5.4.4항의 방폭, 방진 및 방수요건들을 준수해야 함. 냉동 컨테이너 상의 고정된 장치는 그러한 요건들을 2032년 1월 1일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만족해야 함.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긴급대응절차(EmS 가이드)'가 MSC.1/Circ.1588/Rev.3로 개정사항 42-24와 함께 승인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LSA Code		CODE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 (LSA Code, Chapter 2)	Res.MSC.554(108)

적용 : Life jackets to be provided onboard on or after 1 January 2026

(2.2.1.6.2)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

구명조끼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입(mouth)' 뿐만 아니라 '코(nose)' 또한 물 밖에 나온 '얼굴-위(face-up)' 자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지도록 그 수중성능기준이 개정됨.

관련문서:

- '구명설비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 (결의서 MSC.81(70))가 결의서 MSC.563(108)를 통해 개정됨.
- '개정된 표준 구명평가 및 시험성적서 양식 (개인구명설비)'이 MSC.1/Circ.1628/Rev.2 에 의해 개정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LSA Code		CODE	생존정 및 구조정의 강하 속도 (LSA Code 6장)	Res.MSC.554(108)

적용 : Launching appliance that is provided onboard on or after 1 January 2026

(6.1.2.8 and 6.1.2.10)

생존정 및 구조정의 최소 강하 속도 상한치를 1.0 m/s 로 설정하고, 최대 강하 속도를 1.3 m/s 로 제한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선박에 설치되는 진수설비의 검사 시, 현장 검사원은 생존정 또는 구조정의 진수 속도가 개정된 LSA Code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예정임.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LSA Code		CODE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진수를 위한 단일 폴 및 후크 장치 (LSA Code 4장)	Res.MSC.554(108)

적용 : Release mechanism that is provided onboard on or after 1 January 2026

(4.4.7.6.17)

기존 LSA Code 4.4.7.6.17 항에 따라 단일 폴 및 후크 장치는 코드의 4.4.7.6 항 하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면제가 부하 이탈 성능이 있는 단일 폴 및 후크 장치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음.

개정된 4.4.7.6.17 항은 단일 폴 및 후크 장치에 부하 이탈 성능이 없는 경우에만 부하 이탈 장치와 관련된 요건들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문구를 명확히 제시함.

또한, 개정된 4.4.7.6.17항에서 면제 가능한 항목 중 하나였던 4.4.7.6.8항을 삭제함으로써, 4.4.7.6.8항은 더 이상 면제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로 식별되지 않음.

이 개정 과정에서 4.4.7.6.8 항은 보트의 회수 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후크가 리셋되지 않는 한 그 형식과 상관없이 하중이 얼마가 되든간에 지지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 개정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설치되는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이탈 장치에 적용되며, 결의서 MSC.563(108)를 통해 '구명 설비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 (결의서 MSC.81(70))의 개정에도 반영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LSA Code		CODE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 (LSA Code Ch.IV/4.6)	Res.MSC.535(107)

적용 : Totally enclosed lifeboats installed on or after 1 January 2029

MSC 107 은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수단에 관한 요건을수립하고자 LSA Code IV 장의 개정을 채택함. 그러한 환기수단은 동력 또는 수동(passive) 타입일 수 있으나,구명정이 수용하도록 승인된 총 승선인원 1 인당 5 m³/hour 의 환기용량을 만족해야 함. 전폐형 구명정에 대한 추가 시험은 Res.MSC.544(107) "구명 설비 시험에 대한 개정된 권고(Res.MSC.81(70))"를 참고할 것.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MARPOL		MARPOL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개정된 보고요건에 관한 MARPOL Protocol I의 Article 5조의 개정안	Res.MEPC.384(81)

적용 : 컨테이너를 화물로 운송하는 모든 선박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개정된 보고요건에 관한 MARPOL Protocol I의 Article 5조의 개정안이 Res.MEPC.384(81)로 채택됨. 동 개정안은 화물컨테이너의 손실 시 SOLAS 관련규정의 보고요건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Article II(1)(b)에 따른 컨테이너 유실보고는 SOLAS Chapter V장 31 및 32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다만, 화물컨테이너 유실에 관한 SOLAS Chapter V장의 31 및 32규칙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됨을 고려하여, 동일한 취지의 MARPOL 개정안 또한 같은 날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구명설비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에 대한 개정	Res.MSC.544(107)

적용 : Immersion suits and life jackets

동 결의서는 인간 시험체를 활용한 방수복 방열시험 시 피부온도가 10℃ 미만으로 하강하는 경우 그 지속시간을 15 분으로 제한하도록 '구명설비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 (Resolution MSC.81(70))의 3.2.3 항을 개정함. 또한, 동 결의서는 구명조끼의 요소 및 재료 관련 Res.MSC.81(70)에 현재 주석된 참조들을 ISO 12402-7:2020로 업데이트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RES	환기설비가 설치된 전폐형 구명정의 연차정밀검사	Res.MSC.559(108)

적용 : Cases applicable to lifeboats annual thorough examination to be implemented on after 1 January 2026 (Main target: Totally enclosed lifeboats to be installed on after 1 January 2029)

Res.MSC.402(96)은 SOLAS Reg.III/20.11을 뒷받침하며 구명정, 구조정,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를 서비스하는 전문공급자의 승인 및 활동에 대한 상세요건을 제공하는 강제 IMO 문서임.

이와 관련 Res.MSC.535(107)를 통해 LSA Code IV장 생존정 요건이 개정되면서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설비 관련 요건이 신설 되었음.

상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Res.MSC.402(96)이 Res.MSC.559(108)로 개정되면서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설비를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연차정밀검사 및 작동시험의 점검 항목이 추가되었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SOLAS	하역설비 및 앵커 핸들링 원치1에 관한 SOLAS 신규 요건 (Reg.II-1/3-13)	Res.MSC.532(107)

적용 : All ships

선급 규칙 및/또는 ILO Convention No.152를 통해 규제되어온 바 있는 하역설비 및 앵커 핸들링 원치를 SOLAS 협약 하에서 규제하기 위해 MSC 107은 MSC 106의 승인을 거쳐 마침내 SOLAS II-1장의 개정을 채택함.이와 관련, SOLAS II-1장 하에 '하역설비', '앵커 핸들링 원치' 및 '하역장구' 등과 같은 각종 용어의 정의가 2규칙에 추가되고, 하역설비 및 앵커 핸들링 원치의 안전조항이 신규 3-13규칙으로 신설됨.

동 개정사항들은 2026.1.1 발효 예정이며, 그중 일부조항들은 2026.1.1 전 설치된 설비에도 소급적용 예정임.

MSC 107이 MSC.1/Circ.1662 및 MSC.1/Circ.1663로 각각 함께 승인한 '앵커 핸들링 원치에 관한 지침' 및 '하역설비에 관한 지침'은 이번에 채택된 신규 SOLAS II-1장 3-13규칙에 대한 세부요건들을 제시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SOLAS	PFOS를 함유한 소화약제의 사용 및 보관 금지 (SOLAS Reg.II-2/10.11 Fire-extinguishing media restrictions)	Res.MSC.532(107), MSC.536(107), MSC.537(107)

적용 : All ships from 1 January 2026

MSC 107은 MSC 106 의 승인을 거쳐 과불화옥탄술폰산(이하 'PFOS')을 함유한 소화약제의 사용 및 보관을 금지하고 육상수용시설로의 폐기를 강제화하는 SOLAS II-2 장, 1994 HSC Code 및 2000 HSC Code의 개정을 채택함. 동 개정사항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임.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PFOS (과불화옥탄술폰산)을 함유한 소화약제의 사용 및 보관이 금지됨.

또한 현존선의 소화약제(예: 폼 용액)가 PFOS 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026.1.1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검사까지 적절한 육상수용시설로 폐기되어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SOLAS	전자경사계의 설치 (SOLAS Reg.V/Reg.19.2.12)	Res. MSC.532(107)

적용 : Bulk carriers and container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MSC 107은 2026.1.1 이후 건조되는 3,000 GT 이상 컨테이너선 및 산적화물선에 전자경사계의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SOLAS V 장의 개정을 채택함. 이와 관련, '산적화물선' 및 '컨테이너선'의 용어 정의가 SOLAS V 장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전자경사계 성능기준(Resolution MSC.363(92))이 SOLAS V 장18 규칙 하에 주석으로 기재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	------------	------------	-----------	-------	-------------------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SOLAS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선에 대한 안전조치 (SOLAS Reg.XIV/3-1)	Res.MSC.532(107), Res.MSC.538(107)
적용 : Non-SOLAS ships operating in the polar waters MSC 107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선에 대한 안전요건을 제공할수 있도록 SOLAS XIV 장 및 Polar Code 의 개정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Polar Code I-A 장 하에 신규 9-1 장(항해안전) 및 11-1 장(항해계획)을 별도 수립함. 동 개정사항은 2026.1.1 시행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범주의 SOLAS 비-적용선에 적용. 단, 이러한 SOLAS 비-적용선이 2026.1.1 전 건조(K/L)되었다면 극지운항을 위해 2027.1.1 까지 Polar Code I-A 장 하의 신규 9-1장 및 11-1장을 만족해야 함: - 전장 24m 이상 어선; -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300GT 이상 유람요트; 그리고 - 300GT 이상 500GT 미만 화물선.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SOLAS	개정된 각종 안전증서 양식 (Certificates and Forms of SOLAS, HSC Code and SPS Code)	Res.MSC.532(107), Res.MSC.533(107), Res.MSC.534(107), Res.MSC.536(107), Res.MSC.537(107), Res.MSC.542(107), Res.MSC.543(107)
적용 : All ships MSC 107은 1974 SOLAS 협약, 1978 SOLAS 프로토콜, 1988 SOLAS 프로토콜, 1994 HSC Code, 2000 HSC Code, 1983 SPS Code 및 2008 SPS Code 등에 첨부되는 각종 안전증서 양식들의 개정을 채택함. 개정된 증서양식들은 결의서 MSC.532(107) 및 MSC.207(81)에 의해 각각 채택된 SOLAS V 장 및 LSA Code개정사항들을 반영함. 동 개정사항은 2026.1.1 발효 예정이며, 2026.1.1 전 이전 양식으로 발행된 관련 증서들은 MSCMEPC.5/Circ.6의 3.1항에 따라 그 유효기한까지 재발행될 필요 없음.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SOLAS	연료유 관련 SOLAS II-2장의 개정	Res.MSC.520(106)
적용 : All ships including those constructed before 1 July 2012 and enter into force on 1 Jan 2026. SOLAS Reg.II-2/4.2.1 인화점 60°C 미만인 연료유의 사용 금지 벙커링 전 연료유 공급자들은 공급될 연료유가 SOLAS II-2/4.2.1를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활용된 시험방법을 표시하는 선언서를 선박에 제공해야 함. 또한,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의 Bunker Delivery Note (BDN)에는 측정된 인화점 자체 또는 인화점이 70°C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는 문구 중 하나가 명시되어야 함. 대표적 샘플 분석 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경우, 주관청은 IMO에 해당 사례를 보고하고 부적합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연료유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해상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SOLAS Reg.V/31 and V/32)	Res.MSC.550(108)
적용 : All ships SOLAS Reg.V/31 위험통보 해상유실 컨테이너의 발생 또는 탐지 시 보고 의무를 수립함.					

- (31.2.1) 선장**
본선 컨테이너 유실 시, 사고상세를 즉각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인근 선박, 인근 연안국 및 기국 등으로 통신할 것.

(31.2.2) 회사
31.2.1규칙의 선박이 퇴선되거나 선박의 보고가 불완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선박 회사가 보고하여야 함.

(31.2.3) 기국
컨테이너 유실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IMO로 보고*
* 결의서 A.1074(28) "GISIS를 통한 통보 및 회람"를 참조

(31.2.4) 선장
해상에서 부유중인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 발견상세를 즉각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인근 선박 및 인근 연안국으로 통신

SOLAS Reg.V/32 위험통보에 필요한 정보
해상에서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부유중인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의 보고정보를 규정함.

(32.3.1) 컨테이너 유실
.1 일반정보 (일시, 선박식별정보, 발신자, 수신자 등)
.2 위치보고 (위도/경도 또는 랜드마크로부터의 진방위 및 거리)
- 컨테이너 유실 시 선박 위치; 또는
- 컨테이너 유실 시 선박 추정위치; 또는
- 컨테이너 유실의 인지 당시의 선박 위치
.3 유실 컨테이너 총수 또는 추정수
.4 컨테이너 내 화물의 종류 (위험물 여부, UN 번호)
.5 컨테이너 상세 (크기, 형식 (예: 냉동컨테이너), 빈 컨테이너의 수)
.6 추가정보

(32.3.2) 해상에서 부유중인 컨테이너 발견
.1 일반정보 (일시, 선박식별정보, 발신자, 수신자 등)
.2 위치보고 (발견 시각 UTC, 일자, 위치 또는 랜드마크로부터의 진방위 및 거리)
.3 발견된 컨테이너의 총수
.4 추가정보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SOLAS	연료유 품질 (SOLAS Reg.II-2/4)	Res.MSC.550(108)

적용 : All ships

(4.2.1.8) 연료유 품질
선박에 수급되고 사용되는 연료유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관의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인원에게 해롭지 않아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SOLAS	제어장소 및 화물제어실의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 (SOLAS Reg.II-2/7.5.5)	Res.MSC.550(108), MSC.1/Circ.1456/Rev.1

적용 : All carg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7.5.5) 화물선의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보호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화물선의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는 모든 화재보호방식(IC, IIC 및 IIIC)에 있어 모든 제어장소 및 화물제어실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SOLAS	현존 로로 여객선의 화재안전 (SOLAS Reg.II-2/20, 현존선 소급요건)	Res.MSC.550(108)

적용 : For existing passenger ships constructed before 1 January 2026, if applicable, the following retroactive requirements are to be confirmed by attending surveyor(s) no later than the first survey coming on or after 1 January 2028.

- (20.4.1.6)**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의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는 연기 및 열 탐지기를 구비해야 함. 이 경우, 열 탐지기는 연기 탐지기의 설치간격 및 범위 요건(즉, 5.5m 및 74 제곱미터)을 준수해야 함.
- (20.4.4)**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에는 즉각적 재생 (playback) 및 최소 24시간의 기록저장이 가능한 효과적인 비디오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20.6.2.3)**
물 방사기(water monitor)로 구성된 고정식 물-기반 소화장치가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로로 여객선에 설치되어야 함. 용량은 FSS Code의 신설요건이 아닌 SOLAS 본문의 요건을 따를 것.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신조 로로 여객선의 화재안전 (SOLAS Reg.II-2/20)	Res.MSC.550(108)

적용 : New building passenger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6.

- (20.4.1.1 ~ 20.4.1.4)**
개별적으로 구분가능한(individually identifiable)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가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 내 연기 및 열 탐지기로 제공되어야 함. 열 탐지기 대신 선형적 열 탐지기(linear heat detector)가 대안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20.4.3.1)**
항해 중 항시 지속적 화재당직이 유지되는 특수분류구역의 경우, 기존과 달리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가 더 이상 면제될 수 없음.
- (20.4.4)**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에는 즉각적 재생 (playback) 및 최소 7일의 기록저장이 가능한 효과적인 비디오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20.5.2)**
로로구역의 개구(opening)에 관한 구체적 요건들이 수립됨. 새로운 요건에도 불구하고, 램프(ramp) 및 문과 같이 강 또는 A-0 등급의 폐쇄장치를 갖춘 개구는 그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허용될 수 있음.
- (20.6.2.1 및 20.6.2.2)**
물 방사기(water monitor)로 구성된 고정식 물-기반 소화장치가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이러한 물 방사기는 FSS Code의 신설 조항, 즉, 7장 2.5항을 만족해야 함. 이와 관련 노출갑판 상 누적되는 소화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125% 용량의 배수설비가 제공되어야 함.
- (20.7)**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fixed pressure water-spraying system)이 설치된 경우,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 내 데크, 격벽 및 수직 경계면에는 고정식 소화장치의 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 및 마킹이 제공되어야 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6-01-01	Amendments to the STCW Code		CODE	폭력 및 괴롭힘 방지와 대응을 위한 선원 교육 (STCW Code)	Res.MSC.560(108)

적용 : All ships

STCW Code / PART A / CHAPTER VI / Section A-VI/1

STCW Code 의 Part A에 수록된 표 A-VI/1-4 는 선원의 개인 안전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세부 최저 역량 기준을 제공함. 이와 관련해 MSC 108은 성희롱, 따돌림 및 성폭행을 포함한 폭력 및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선원 역량 교육을 표 A-VI/1-4에 포함한 STCW Code 의 개정을 채택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8-01-01	Amend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SOLAS	탱커 외 선박을 위한 비상예인장치 (SOLAS Reg. II-1/3-4)	Res.MSC.549(108)

적용 : Ships other than tankers of not less than 20,000 gross tonnage, constructed 1 on or after 1 January 2028

탱커를 제외한 총톤수 20,000톤 이상의 2028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비상예인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다만, 이러한 개정은 탱커에 요구되는 장치에 비해 설계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선수 및 선미 모두에 비상예인장치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지 않음.

* "건조된 선박"이란 SOLAS regulation II-1/1.3.1에 따라 용골(keel)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을 의미함.

Effective Date	Convention	Regulation	Character	Title	Relevant Document
2029-01-01	Amendments to the Resolutions		RES	ECDIS 성능기준의 개정 (항로 계획의 교환)	Res.MSC.530(106)/Rev.1

적용 : All ships

ECDIS 성능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IHO 표준 S-100 시리즈를 도입할 수 있도록 2022년에 Res.MSC.530(106)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NCSR 10은 선박 및 육상의 해사서비스 제공자 간 ECDIS 를 통해 ETA 및 ETD 등 항로일정을 포함한 항로계획을 교환할 수 있도록 ECDIS 성능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하였고, 개정안은 MSC 108에서 승인되어 Res.MSC.530(106)/Rev.1으로 발간될 예정임.

개정된 성능기준은 기존 성능기준인 Res.MSC.530(106)을 대체하여 2029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ECDIS에 적용됨.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9년 1월 1일 전까지 설치되는 ECDIS는 개정된 성능기준 Res.MSC.530(106)/Rev.1 또는 Res.MSC.232(82)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됨.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 : 1566-1682 / FAX : 070-8799-8999
www.krs.co.kr